

- 중구민을 위한 도시 -

공 고



서울중구

서울특별시 중구

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
공고 제 766 호

제목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- 동정부과-17957(2021.10.13.)호 관련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

- 가. 예고문안 : 불임 입법예고문
나. 예고방법 :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, 게시판 등에 공고
다. 공고일자 : 2021. 10. 15.
라. 공고기간 : 2021. 10. 15.~ 11. 04. (20일간)

불임
입법예고문 1부. 끝.

공
고

주무관 박푸름 동정부추진팀장 이창하 ★동정부과장 전결 10/14
조덕진

협조자 주무관 代장연희 의회법제팀장 고 박성현 기획조정과장 김창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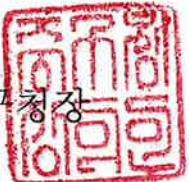
시행 동정부과-18086 (2021.10.14) 접수 ()
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) / <http://www.junggu.seoul.kr>
전화 3396-4556 / 전송 / ppr01122@junggu.seoul.kr / 대시민공개

이 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
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
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
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
합니다.

2021년 10월 15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- 가. 현행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규칙 제정(2011)
이래 10년간 동결 지속되어 현실화 필요
- 나.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구민 눈높이 상향 및 수요 증가에 대응
하기 위하여 수당 지급기준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인력 확보 필요

2. 주요내용

- 가. [별표]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수당 지급 범위(제18조제1항
관련) 정비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동정부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, 전화 : 3396-4556, FAX : 3396-8613, E-mail : ppr01122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.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첨부 1.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
규칙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 및
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

규칙안

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 수당 지급 범위 [제18조제1항 관련]

구 분	기 준	금 액
자원봉사자	4시간 이 하	10,000원
	4시간 초과 ~ 8시간 이 하	20,000원
강사	일반강사	시간당 24,000원~50,000원
	특별강사	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정안전부훈령) 별표 '교육강사수당 기준'을 따름

※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수당은 위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감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</p> <p>[별표]</p> <p>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 수당 지급 범위</p> <p>[제18조제1항 관련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기 준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금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자원 봉사 자</td> <td>일 반</td> <td>1일 (2시간 ~ 8시간)</td> <td>7,000원</td> </tr> <tr> <td>실무 전담</td> <td>1일 (4시간 ~ 8시간)</td> <td>20,000원</td> </tr> <tr> <td>강사</td> <td>프로 그램 강사</td> <td>시간당</td> <td>24,000원 ~ 35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기 준	금 액	자원 봉사 자	일 반	1일 (2시간 ~ 8시간)	7,000원	실무 전담	1일 (4시간 ~ 8시간)	20,000원	강사	프로 그램 강사	시간당	24,000원 ~ 35,000원	<p>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</p> <p>[별표]</p> <p>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 수당 지급 범위</p> <p>[제18조제1항 관련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기 준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금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자원 봉사자</td> <td></td> <td>4시간 이하</td> <td>10,000원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4시간 초과 ~ 8시간 이하</td> <td>20,000원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강사</td> <td>일반 강사</td> <td>시간당</td> <td>24,000원 ~ 50,000원</td> </tr> <tr> <td>특별 강사</td> <td>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(행정안정부훈령) 별표 '교육강사 수당 기준'을 따름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기 준	금 액	자원 봉사자		4시간 이하	10,000원		4시간 초과 ~ 8시간 이하	20,000원	강사	일반 강사	시간당	24,000원 ~ 50,000원	특별 강사	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(행정안정부훈령) 별표 '교육강사 수당 기준'을 따름	
구 분	기 준	금 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자원 봉사 자	일 반	1일 (2시간 ~ 8시간)	7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실무 전담	1일 (4시간 ~ 8시간)	2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강사	프로 그램 강사	시간당	24,000원 ~ 35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기 준	금 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자원 봉사자		4시간 이하	1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4시간 초과 ~ 8시간 이하	2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강사	일반 강사	시간당	24,000원 ~ 5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특별 강사	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(행정안정부훈령) 별표 '교육강사 수당 기준'을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* 강사수당은 위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감할 수 있다.</p>		<p>*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 수당은 위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감할 수 있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